

사업장의 안전·보건 관리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,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조직이 필요하다. 이에 따라,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의 종류, 규모,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절한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사업장에서 안전·보건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·보건 관리체계를 이해하고자 한다.

1. 이사회 보고 및 승인(법 제14조)

「상법」 제 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(시행령 제13조)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**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**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대상 :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,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(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)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
-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.
 -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
 - ② 안전·보건관리 조직의 구성·인원 및 역할
 - ③ 안전·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
 -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

2. 안전보건관리책임자(법 제15조)

2.1 자격 및 선임방법

- 자격 :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.
- 선임방법 : 선임 사실 및 법 제15조제1항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2.2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

건설업 외	건설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등 ✓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(시행령 별표2) 참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공사금액 20억원 이상

2.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

- 총괄·관리 업무(법 제15조 제1항)
 -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- ②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③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 -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- ⑤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 -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 -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
 -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
 - ⑨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·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(시행규칙 제9조)
 -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
 -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
- 지휘·감독 업무(법 제15조 제2항)
 -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·감독한다.
-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의 권익에 대한 조치 의무(법 제20조)
 -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이 관리책임자의 총괄·관리 업무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·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3. 관리감독자(법 제16조)

3.1 자격 및 지정방법

- **자격** :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**지정방법** :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존한다.

3.2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

- **대상** :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
- **제외대상**(※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(시행령 별표1) 참조)
 -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 - 가. 공공행정(청소, 시설관리,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)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 - 나.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·중등·고등 교육기관, 특수학교·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(청소, 시설관리,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)
 - 다. 초등·중등·고등 교육기관, 특수학교·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(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)
 - 라. 국제 및 외국기관
 - ②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(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)
 - ③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

3.3 관리감독자의 업무(시행령 제15조 제1항)

- ①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·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·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
-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·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·사용에 관한 교육·지도
- ③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
- ④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·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·감독
- ⑤ 사업장의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, 산업보건익의 지도·조언에 대한 협조
- ⑥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
 - 가. 유해·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.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
- ⑦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4. 안전관리자(법 제17조)

4.1 자격 및 선임방법

- **자격** : 시행령 별표4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
- **선임방법** :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의 선임 보고서를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(시행령 제16조 제6항)

4.2 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

건설업 외	건설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등 ✓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,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(시행령 별표3) 참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공사금액 50억원 이상(관계수급인 100억원 이상) 120억원 미만 [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] ✓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[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]

※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공사금액이 120억원[토목공사 150억원] 이상인 건설업에는 해당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업무(시행령 제18조 제1항)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.(시행령 제16조 제2항)

4.3 안전관리자의 공동선임

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,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명 이내인 경우에는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.(시행령 제16조 제4항)

- ① 같은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함)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
- ②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km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

4.4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

- 시행령 제52조(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)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.(시행령 제16조 제3항)
 - ※ 단,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,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(시행령 별표3)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- 적용대상 도급사업

건설업 외		건설업
50명 이상	100명 이상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선박 및 보트 건조업 ✓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50명 이상 대상업종 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※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 포함

※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(시행령 제52조)과 동일함

-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.(시행령 제16조 제5항, 시행규칙 제10조)
 - ①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
 -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 사업주의 사업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(건설공사의 경우 건설 공사금액)를 합산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

4.5 안전관리자의 업무(시행령 제18조)

-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·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
-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④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⑤ 사업장 순회점검, 지도 및 조치 건의
- ⑥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·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·관리·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⑧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⑨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·유지
- ⑩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4.6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(시행령 제19조 제1항)
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” 이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및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본다.

※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(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)의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이 불가능 하다. <시행일 '21. 10. 21>

4.7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·조언(법 제20조)

사업주,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·관리 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·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5. 보건관리자(법 제18조)

5.1 자격 및 선임방법

- 자격 :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
- 선임방법 :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의 선임 보고서를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(시행령 제20조 제3항)

5.2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

건설업 외	건설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등 ✓ <u>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,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(시행령 별표5) 참조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(토목공사 1,000억원 이상)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

5.3 보건관리자의 업무(시행령 제22조)

-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·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
-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③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④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⑤ 산업보건직의 직무(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.)
- ⑥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⑦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(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.)
 - 가.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
 - 나.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
- 다. 부상·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
- 라.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
-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
- ⑧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⑨ 사업장 순회점검, 지도 및 조치 건의
- ⑩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·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⑪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·관리·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⑫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⑬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·유지
- ⑭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

6. 안전보건관리담당자(법 제19조)

6.1 자격 및 선임방법

○ **자격** :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·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선임한다.

- ①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
- ②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

○ **선임방법** : 선임 사실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

6.2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(시행령 제24조)

사업의 종류	규모
1. 제조업 2. 임업 3. 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.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. 환경 정화 및 복원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

6.3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(시행령 제25조)

- ①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③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
- ④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,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⑥ 산업 안전·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
7. 산업보건의(법 제22조)

7.1 자격 및 선임방법

- 자격 :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,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(시행령 제30조)
- 선임방법 :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의 선임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(시행령 제29조 제3항)

7.2 산업보건의의 직무(시행령 제31조)

- ①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,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
- ②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
- ③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8. 명예산업안전감독관(법 제23조)

8.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(시행령 제32조 제1항)

-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·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(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·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
- ②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
- ③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
- ④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

8.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(시행령 제32조 제2항)

- ①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「근로기준법」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(이하 “근로감독관”이라 한다)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
- ②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·기구 자체검사 참석
- ③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
- ④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
- ⑤ 작업환경측정,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
- ⑥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
- ⑦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
- ⑧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
- ⑨ 안전·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
- ⑩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
8.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임기(시행령 제32조 제3항, 제4항)

- ①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② 고용노동부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

9. 산업안전보건위원회(법 제24조)

9.1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(법 제24조 제1항)

건설업 외	건설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등 ✓ 시행령 별표9 참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(토목공사 150억원 이상)

9.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(법 제24조 제2항)

- ① 법 제15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
- ② 법 제15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
- ③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을 도입한 경우 안전·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
- ④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·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9.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(시행령 제35조, 제36조)

- 위원장
- ✓ 위원 중 호선(互選)
- ✓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

▪ 사용자위원

- ✓ 해당 사업의 대표자(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)
- ✓ 안전관리자 1명(위탁 시 전문기관 담당자)
- ✓ 보건관리자 1명(위탁 시 전문기관 담당자)
- ✓ 산업보건역(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)
- ✓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



▪ 근로자위원

- ✓ 근로자대표
- ✓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
- ✓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(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 수)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

※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※ 다만,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「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」은 제외할 수 있다.

9.4 회의 방법 및 회의록 작성(시행령 제37조, 제39조)

-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근로자대표, 명예산업안전감독관, 해당 사업의 대표자,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
 - 개최 일시 및 장소
 - 심의 내용 및 의결·결정 사항
 - 출석위원
 - 그 밖의 토의사항
- ⑤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(社內報),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,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.

10. 안전보건총괄책임자(법 제62조)

10.1 자격 및 선임방법

- 자격 :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.
- 선임방법 : 선임 사실 및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(시행령 제53조 제3항)

10.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(시행령 제53조)

-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
-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·조정 및 집행의 감독
- ② 작업의 중지
- ⑤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
- ③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

안전보건교육일지

결 재				

교육일시	년 월 일 : ~ : (시간)				
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(산안법 시행 규칙 제26조 제1항 관련)	교육과정	교육대상			교육시간
	□ 정기교육	사무직 종사 근로자			- 매반기 6시간 이상
		그 밖의 근로자	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		- 매반기 6시간 이상
			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		- 매반기 12시간 이상
	□ 채용 시 교육	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			- 1시간 이상
		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			- 4시간 이상
		그 밖의 근로자			- 8시간 이상
	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	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			- 1시간 이상
		그 밖의 근로자			- 2시간 이상
	□ 특별교육	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:별표5 제1호 라목(제39호는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.			- 2시간 이상
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:별표5 제1호 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.			- 8시간 이상		
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를 제외한 근로자 : 별표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.			- 16시간 이상 (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) -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		
교육인원	구 분	계	남	여	비 고
	대 상 인 원				【교육 참석자 명단】 참조
	참 석 인 원				
교육제목	안전보건관리체제				
교육내용	1. 이사회 보고 및 승인 2.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. 관리감독자 4. 안전관리자 5. 보건관리자		6. 안전보건관리담당자 7. 산업보건의 8. 명예산업안전감독관 9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0. 안전보건총괄책임자		
교육장소 및 실시자	교육장소	직 명		성 명	

< 교육 참석자 명단 >

연 번	소 속	성 명	서 명	연 번	소 속	성 명	서 명
1				26			
2				27			
3				28			
4				29			
5				30			
6				31			
7				32			
8				33			
9				34			
10				35			
11				36			
12				37			
13				38			
14				39			
15				40			
16				41			
17				42			
18				43			
19				44			
20				45			
21				46			
22				47			
23				48			
24				49			
25				50			